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8. 9. 19.(수), 13:00~17: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청규, 한창균, 박광춘, 노혁진, 문상련, 정재윤,
김건수, 한필원(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합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공개
2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정비사업부지 발굴	공개
3	「순창 홀어머니산성」 정비사업부지 발굴	공개
4	「양산 북정리 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공개
5	「천안 성거산 위례성」 정비사업부지 발굴	공개
6	「강릉 한송사지」 정비사업부지 발굴	공개
7	오산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부지내 유적 발굴변경	공개
8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정비사업부지 발굴	공개
9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	공개
10	제주 중앙로상점가 주차장 복층화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1	경주 성건동 도시계획도로(소3-37) 개설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2	의성 윤암리고분군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3	공주 교촌리 백제전축분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4	부여 쌍북리(56번지) 사비한옥마을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공개
15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6	세종 송곡리(산26-1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 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공개
17	서울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8	강화 신정리(233-1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공개
19	(재)진흥문화재연구원 기관운영 및 발굴조사 부적정 관련 행정처분 심의	공개

【보고사항】

1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공개
2	2018년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개

심 의 사 항

1.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전라남도 함평군 소재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도 기념물 제151호) 정비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유적의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고분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함평군수
- (2) 문화재명 :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전라남도 기념물 제151호)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6번지 일원
 - 지정일 : 1994.1.31
- (3) 신청내용 : 발굴(정밀)조사 허가
 - 조사지역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산 84-2번지 일원
 - 조사면적 : 2,518m²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179,000,000원
 - 조사기관 : (재)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 조사단장 : ○○○(동 연구소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소장)

라. 참고사항

- 동 사업은 전라남도의 2018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 발굴조사 현황

연도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면적	조사유형	조사결과	사유
2014	함평 금산리 고분	(재)전남문화재연구소	2014.10.26. ~2014.12.24.	2,946m ²	시굴	분구축적 및 주구 확인	정비사업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유적의 발굴조사 범위 등을 현지조사에서 결정
- 조건부가결 8명 / 출석 8명

2.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정비사업부지 발굴

가. 제안사항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도 기념물 제135호) 정비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유적의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추정 송산행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격 규명과 정비·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동 건은 본 위원회 제7차 회의(2018. 7. 18.) 시 ‘발굴조사 계획서 보완 및 중장기 발굴조사 계획 제출 후 재심의’토록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군산시장
- (2) 문화재명 :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전라북도 기념물 제135호)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4번지 일원
 - 지정일 : 2017. 04. 07.
- (3) 신청내용 : 발굴(정밀)조사 허가
 - 조사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4번지
 - 조사면적 : 833m²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1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100,733,870원
 - 조사기관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연구위원)
- (4) 보완내용 : 유적 기준점·그리드 설정 및 중장기 발굴조사 계획 제출

라. 참고사항

- 동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2018.6.28.)를 득하고 추진하는 사항임
- 동 사업은 전라북도의 2018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 발굴조사 현황

연도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면적	조사 유형	조사결과	사유
2013	군산 선유도리 고려 승산행궁지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3.12.02. ~2013.12.31.	17,500㎡	시굴	고려시대 적십 배수로, 담장 등 확인	학술조사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3. 「순창 흠어머니산성」 정비사업부지 발굴

가. 제안사항

순창군에서 추진하는 전라북도 순창군 소재 「순창 흠어머니산성」(도 문화재자료 제70호) 정비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유적의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2017년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추정 집수지 정밀발굴조사 및 대모암 경내 추정 집수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순창군수
- (2) 문화재명 : 순창 흠어머니산성(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0호)
 - 소재지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55번지 일원
 - 지정일 : 2017. 04. 07.
- (3) 신청내용 : 발굴(정밀·시굴)조사 허가
 - 조사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55번지 일원
 - 조사면적 : 311㎡(정밀발굴 207㎡, 시굴 104㎡)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52,885,000원
 - 조사기관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부원장)

라. 참고사항

- 동 사업은 전라북도의 2017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 발굴조사 현황

연도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면적	조사 유형	조사결과	사유
2001	순창 홀어머니산성 내 유적	(재)호남문화재 연구원	2001.05. ~2001.12.	225㎡	시굴	문지 및 건물지 등 확인	정비사업
2002	순창 홀어머니산성	(재)호남문화재 연구원	2001.07. ~2001.09.	225㎡	발굴	북문지(선대문지) 확인	정비사업
2012	순창 홀어머니산성	(재)전북문화재 연구원	2012.07.02. ~2012.08.23	210㎡	발굴	남성벽 확인	정비사업
2017 ~2018	순창 홀어머니 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재)전주문화유산 연구원	2017.09.25. ~2018.08.23	5,280㎡	시·발굴	서성벽 및 건물대지, 남문추정지 확인	정비사업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4. 「양산 북정리 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가. 제안사항

양산군에서 추진하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양산 북정리 고분군」(사적 제93호) 정비 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유적의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9호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양산시장
- (2) 문화재명 : 양산 북정리 고분군(사적 제93호)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697번지
 - 지정일 : 1963.1.21
- (3) 신청내용 : 발굴(정밀)조사 허가
 - 조사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697번지 일원
 - 조사면적 : 500m²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3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152,106,000원
 - 조사기관 :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조사단장 : ○○○(동 센터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연구위원)

라. 참고사항

- 동 사업은 2018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 발굴조사 현황

연도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면적	조사유형	조사결과	사유
1920	양산 부부총	조선총독부	1920.11.13. ~1920.11.25	-	발굴	황구식석실 확인	학술조사
1990	양산 금조총 · 부부총 외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0.04.13. ~1990.09.20	25,994 m ²	발굴	금조총, 부부총 외 황구식 석실 다수 확인	구제발굴
1991	양산 하북정유적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1.08.01. ~1991.10.5	-	발굴	황구식 · 황혈식석실, 수혈식 석곽 등 확인.	구제발굴
2008	양산시 유물전시관 건립계획부지	(재)한국문화연구원	2008.05.07. ~2008.08.29	2,110m ²	발굴	황구식석실, 고려시대 건물지, 탄요 등	정비사업
2015	양산 북정리 고분	(재)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5.11.30. ~2015.12.02	139.5m ²	시굴	유구 미확인	정비사업

마. 의결사항

- 보류
 - 발굴조사 계획서 보완(조사방법 등) 후 재심의
- 보류 8명 / 출석 8명

5. 「천안 성거산 위례성」 정비사업부지 발굴

가. 제안사항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천안 성거산 위례성」(도 기념물 제148호) 정비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유적의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위례성 목곽고를 중심으로 서벽 체성 및 동쪽 석축유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격 규명과 정비·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동 건은 본 위원회 소위원회 제5차 회의(2018. 9. 5.) 시 ‘조사계획 보완 후 재심의’토록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천안시장
- (2) 문화재명 : 천안 성거산 위례성(충청남도 기념물 제148호)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 산45번지 일원
 - 지정일 : 1998. 07. 28.
- (3) 신청내용 : 발굴(정밀)조사 허가
 - 조사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 산45번지
 - 조사면적 : 200m²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7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146,884,300원
 - 조사기관 : (재)고운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장)
- (4) 보완내용 : 전체 그리드 방향 재설정 등 조사계획 보완

라. 참고사항

- 동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2018.7.27.)를 득하고 추진하는 사항임
- 발굴조사 현황

연도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면적	조사유형	조사결과	사유
2009 ~2010	천안 성거산 위례성 내 유적(1차)	(재)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2009.11.05. ~2010.05.20.	2,400㎡	발굴	위례성 성벽 및 성 내부시설 확인	정비복원
2010 ~2011	천안 성거산 위례성 내 유적(2차)	(재)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2010.09.10. ~2011.01.09.	2,500㎡	발굴	서문지 및 남쪽 성벽 구간, 성내 평탄지 확인	정비복원
2016	천안 성거산 위례성 내 용샘(1차)	(재)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2016.06.14. ~2016.08.05.	50㎡	발굴	백제 ~ 고려 시대 우물 확인	정비복원
2017	천안 성거산 위례성 내 용샘(2차)	(재)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2017.07.12. ~2017.11.16.	150㎡	발굴	백제시대 목곽고 및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확인	정비복원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6. 「강릉 한송사지」 정비사업부지 발굴

가. 제안사항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보물 제81호) 정비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유적의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한송사지 사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격 규명과 정비·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릉시장
- (2) 문화재명 :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보물 제81호)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오죽헌 수장고 내
 - 지정일 : 1963. 1. 21.
- (3) 신청내용 : 발굴(정밀)조사 허가
 - 조사지역 : 강원도 강릉시 남향진동 113-2번지 일원
 - 조사면적 : 3,585㎡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3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355,117,000원
 - 조사기관 :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기획연구실장)

라. 참고사항

- 동 사업은 2018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 발굴조사 현황

연도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면적	조사유형	조사결과	사유
2017	강릉 남향진동(113-2번지) 한송사지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08.21. ~2017.09.06.	12,860㎡	시굴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초석, 소성유구, 석렬 등 확인	유적정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가결 8명 / 출석 8명

7. 오산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부지내 유적 발굴변경

가. 제안사항

경기도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공유재산 개발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삼국시대 주거지 및 조선시대 건물지 등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보존대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 동 건은 총 조사기간의 합이 200일 이상(총 277일)의 신청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오산시장
- (2) 신청내용 : 발굴조사 변경허가
 - 조사지역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51-3번지 일원
 - 조사면적 : 24,309㎡(시굴 98,713㎡→정밀발굴 24,309㎡)
(기존 발굴 허가 : 16,550㎡, 금회 발굴허가 : 24,309㎡, 총 정밀발굴허가 : 40,859㎡)
 - 조사기간 : 재착수일로부터 124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984,530,000원
 - 조사기관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책임조사원)

라. 참고사항

- 발굴조사 현황

연도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면적	조사유형	조사결과	사유
2018	오산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 부지 내 유적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018.03.05. ~ 현재	98,713㎡	시굴	삼국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건물지, 분묘 등 확인	구제발굴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8.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정비사업부지 발굴

가. 제안사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사적 제195호) 정비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유적의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지정구역 내 미조사지역에 대한 유구 분포 범위 및 2011년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어구 등에 대한 시굴 및 정밀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 (2) 문화재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산83-1번지 일원
 - 지정일 : 1970. 05. 27.
- (3) 신청내용 : 발굴(정밀·시굴)조사 허가
 - 조사지역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01-3번지 일원
 - 조사면적 : 3,719㎡(정밀발굴 1,533㎡, 시굴 2,186㎡)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153,330,000원
 - 조사기관 : (재)기남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연구위원)

라. 참고사항

- 동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2013.7.10.)를 득하고 추진하는 사항임

○ 발굴조사 현황

연도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면적	조사유형	조사결과	사유
2005	영릉(寧陵) 수리간지 조사	(재)경기문화재연구원	2005.07.06.~2005.08.05.	224m ²	발굴	건물지 기단석, 박석 등 조사	유적 정비
2006	영릉(英陵) 재실터 조사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6.05.10.~2006.05.19.	5,455m ²	시굴	담장지, 적심 3기 등 조사	유적 정비
2006	영릉(英陵) 재실터 유적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06.10.23.~2006.12.31.	2,910m ²	발굴	담장지, 폐기장, 와적층, 성격 미상의 평탄유구, 압거시설 등 확인	유적 정비
2007	영릉(英陵) 능제 관련 유적 발굴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08.31.~2007.09.21.	8,400m ²	시굴	금천교 및 참도, 어구 등 위치 및 형태 확인	학술조사/장비·복원
2011	여주 영릉 능제 관련 유적 발굴 (시굴)조사	(재)국강고고학연구소	2011.03.16.~2011.07.02.	62,380m ²	시·발굴	영릉(英陵) 참도, 금천교, 어정지, 어구 등 조사	유적 정비
2017~2018	영·영릉 유적 종합 정비 (2단계) 시·발굴 조사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7.03.02.~2018.12.22.	16,026m ²	시·발굴	조선시대 연지 및 입수 시설, 근·현대 연지, 집수시설, 배수로 등 확인	유적 정비

마. 의결사항

- 보류
 - 발굴조사 계획서 보완 후 재심의
- 보류 8명 / 출석 8명

9.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보존대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동 건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어 발굴조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 (2) 신청내용 : 발굴(시굴)조사 허가
 - 조사지역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868-4번지 일원
 - 조사면적 : 1,015,290㎡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40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1,224,000,000원
 - 조사기관 : (재)한성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책임조사원)

라. 참고사항

- 발굴조사 계획의 적정성 검토

		대가프로그램	한성문화재연구원	실제 투입 인력
조사일수		232일	140일	실조사일수 140일로 단축
현장	단장	23일	20일	1인×20일 = 20일
	책임조사원	58일	80일	1인×80일 = 80일
	조사원	232일	280일	2인×140일 = 280일
	준조사원	446일	140일	1인×140일 = 140일
	보조원	292일	420일	3인×140일 = 420일

마. 의결사항

- 보류
 - 발굴조사 투입인력 적정성 재검토 후 재심의
- 보류 8명 / 출석 8명

10. 제주 중앙로상점가 주차장 복층화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중앙로상점가 주차장 복층화사업부지 내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8. 8. 28.) 및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중요 유구의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시청
- (2) 신청내용 :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
 - 보존대상 및 범위 : 탐라시대 주거지 외 수혈유구 등(772.14m²)
 - 보존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491-1번지 일원
 - 보존방안 : 현지보존
 - 유구는 고운 흙을 이용하여 벽체에서 40cm이상 복토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발굴조사 성과 및 유적 홍보용 안내판 설치

라. 처리경과

- 전문가 검토회의(2018. 8. 28. / ○○○, ○○○, ○○○)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 : 평점 87.91점
 - 제주지역에서 흔치않은 삼국시대 주거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음
 - 보존가치가 있기에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복토(1m이상)하고, 현장에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마. 참고사항

(1) 조사개요

- 조사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491-1번지 일원
- 조사면적 : 772.14m²
- 조사기간 : 2018. 4. 26.~2018. 7. 24.(실조사일수 29일)
- 조사비용 : 163,150,000원
- 조사기관 : (재)제주고고학연구소
- 조사결과
 - 상층에서는 탐라시기 주거지 2기와 건물지 1동이 확인
 - 하층에서는 수혈유구 20기와 주혈 등이 확인
 - 수혈유구와 주혈에서는 탐라시기 후기의 대표적 토기인 고내리식토기와 회청색경질토, 자기편, 기와편이 출토됨

(2) 지자체 의견(2018. 9. 14.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 유적에 대한 안내판설치
- 유적보존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주차장 복층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보류
 -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한 유적 보존방안을 보완 후 재심의
- 보류 8명 / 출석 8명

11. 경주 성건동 도시계획도로(소3-37) 개설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성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8.7.9) 및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중요 유구의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주시장
- (2) 신청내용 :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
 - 보존대상 및 범위 :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4동 및 대호매납유구 50기 등(937m²)
 - 보존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500-18번지 일원
 - 보존방안 : 현지보존
 - 조사 후 모래 및 흙으로 보호층 조성 및 현지표에서 33cm 복토
 - 차도블럭포장 및 도로 종방향의 스텐블라드 설치하여 차량 통행 제한
 - 복토층 상부에 L형 측구 및 종배수관 설치하여 유적 보호

라. 처리경과

- 전문가 검토회의(2018.7.9. / ○○○, ○○○, ○○○)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 : 평점 85.2점
 - 현재 남아있는 대호의 바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구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유적 전면에 충분한 높이의 모래를 성토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유적의 현황으로 보아 유구가 동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향후 동편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유적에 대한 해석은 기 조사된 유적의 서편과 연결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현재의 유구는 보존조치하여 향후 유적의 전모가 확인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유구 보존조치 후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최소한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

마. 참고사항

(1) 조사개요

- 조사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500-18번지 일원
- 조사면적 : 937m²
- 조사기간 : 2018. 4. 16.~2018. 8. 3.(실조사일수 50일)
- 조사비용 :
- 조사기관 : (재)서라벌문화재연구원
- 조사결과
 -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4동, 암거시설 1기, 기와무지 1기, 고려시대 석렬 1기, 조선시대 수혈 3기, 주혈 1기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3호 건물지는 창고로 추정되는 건물로 55개의 대호가 확인됨
 - 출토유물은 연화문수막새를 비롯한 기와와 대호 뚜껑, 깔대기 등의 토기류, 청동국자 등 청동제품이 출토
 - 건물지의 규모와 대호 매납유구가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창고와 같은 건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됨

(2) 지자체 의견(2018. 9. 12. / 경주시 도로과)

- 유구보존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 보류
 - 유적 안전성 보완한 보존방안 재제출 후 재심의
- 보류 7명 / 출석 7명

12. 의성 윤암리 고분군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경상북도 의성군 소재 ‘윤암리고분군 내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7.1.4)결과에 따라 중요 유구의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 (2) 신청내용 :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
 - 보존대상 및 범위 : 삼국시대 봉토분 등 9기(이전 4기, 현지 5기)(4,930㎡)
 - 보존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산6-30번지 일원
 - 보존방안 :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 훼손구간 유적공원 정비
 - 훼손고분 5기 원상복구 및 가이전고분 4기 복원
 - 석부재 보존처리 및 주체부 내부 모래 복토 후 봉분 성토 및 잔디 식재
 - 주변 정지작업 후 고분 및 주변에 잔디식재하여 표면 보호

라. 처리경과

- (1) 고속국도제30호선 건설구간 내 유적
 - ‘12. 9월~’16. 1월 / 대동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16. 11월 : 점곡휴게소 내 “가”군 유적공원 완료
- (2) 윤암리고분군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2015.8.5. / ○○○, ○○○, ○○○, ○○○)
 - ‘가’군은 휴게소와 연접한 고분공원으로 정비하되, 기저부 조사로 봉분 성토를 적절히 한 다음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군의 남쪽으로 연접하는 봉토분에 대한 보존 관리 대책이 요구됨
 - ‘나’군의 조사범위는 성토 구간으로, 대표적인 유구의 이전보존이 요구되며, 가능하면 휴게소부지로 이전하기 바람(1호, 9호, 11호, 18호)

- ‘나’군 유구는 현장에 안전하게 매몰처리하거나 훼손이 불가피하다면 모든 석재를 휴게소부지로 이전하여 기념물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나’군의 조사범위 남쪽과 북쪽에 연접한 고분들은 사업부지 공사부분과 연접해 있어 특별한 보존대책 수립이 요구됨
- (3) 윤암리고분군 훼손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 사업구역 외 훼손된 고분 5기에 대한 발굴조사
 - 백두문화재연구원 / 2016.12.7.~2017.1.12.
 - 전문가 검토회의(2017.1.4. / ○○○, ○○○)
 - 조사결과, 기존에 발굴조사된 윤암리고분군 내용과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며 잔존상태는 불량함
 - 조사 중인 5기의 봉토분 가운데 2기는 기저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봉분 원상을 복구하고, 나머지 5, 6, 7호분은 정밀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상복구하여 유적공원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당초 나군에서 휴게소부지로 이전복원할 예정이었던 4기의 고분은 현재 조사 고분 주변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조사 고분 주변에 분포하는 고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정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4) 윤암리고분군 이전예정구간(훼손구간 주변) 내 유적 시굴조사
- 백두문화재연구원 / 2017.6.28.~2017.6.29.
 - 조사결과 유구·유물 없음

마. 참고사항

- (1) 사업시행자 의견(2018. 7. 12.)
- 관리주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 예정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3. 공주 교촌리 백제전축분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공주 교촌리 백제전축분 유적' 에 대한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2018.6.22.) 및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중요 유구의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 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공주시장
- (2) 신청내용 :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
 - 보존대상 및 범위 : 발굴조사 완료된 전체유구(600m²)
 - 보존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252-1번지 일원
 - 보존방안 : 현지보존
 - 전축묘는 모래주머니 및 부직포를 이용해 내부 복토 후 유구 주변에 배수로 설치 및 잔디 식재
 - 석축단시설은 유구 전면을 부직포 도포 및 보호 성토

라. 처리경과

- 전문가 검토회의(2018. 6. 22. / ○○○, ○○○, ○○○, ○○○)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 : 평점 90.96점
 - 유적 내 확인된 전축묘는 웅진기 백제 유력 가문과 관련된 무덤으로 송산리 고분군과 함께 웅진기 역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구로 판단됨
 - 교촌봉 정상에 기반유구는 주변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며, 웅진 사비기에 핵심적인 의례를 수행한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 동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송산리 고분군과 연계가 필요함

마. 참고사항

(1) 조사개요

- 조사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252-1번지 일원
- 조사면적 : 600㎡(시굴 15,336㎡→정밀발굴 600㎡)
- 조사기간 : 2017. 8. 30.~2018. 6. 14.(실조사일수 30일)
- 조사비용 : 104,940,000천원
- 조사기관 : 공주대학교 박물관
- 조사결과
 - 백제시대 석축단시설, 전축묘, 석실묘 및 통일신라시대 화장묘, 고려시대 이후 석축묘 등이 확인됨.
 - 백제시대 석축단시설은 일제 강점기 당시 2호 전축분으로 보고된 시설로 ‘교촌봉’ 정상에 위치하며 국가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됨.
 - 백제시대 전축묘는 장방형 묘실에 중앙 연도가 있는 전실분으로 연도의 하부에는 전축배수로를 갖추었고 동서 장벽형태로 보아 무령왕릉과 같은 터널형 구조로 판단됨.

(2) 지자체 의견(2018. 8. 14. / 공주시)

-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토지매입을 하여 보존조치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
- 문화재 지정 신청 및 유적 보존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백제왕도핵심 유적 복원정비 시행계획 및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유적 관리 및 활용할 계획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4. 부여 쌍북리(56번지) 사비한옥마을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부여 사비한옥마을 조성부지 내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7.9.29.) 및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중요 유구의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 동 건은 본 위원회 제5차 회의(2018. 5. 16.) 시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여군수
- (2) 신청내용 :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
 - 보존대상 및 범위 : 발굴조사 완료된 전체유구(24,577㎡)
 - 보존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4번지 일원
 - 보존방안 : 현지보존
 -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도로유구의 재현 및 주요유구 상부에 유적 전시 공간을 설치

라. 처리경과

- 전문가 검토회의(2017. 9. 29. / ○○○, ○○○, ○○○, ○○○)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 : 평점 87.72점
 - 백제 사비도읍기 유적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으므로 복토(성토)하여 현지보존 필요
 - 복토(성토) 후 지하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을 추진 하되 사업 설계 시 도로유구 활용방안 마련 필요

- 문화재위원회의 제5차 회의(2018. 5. 16.)
 - 보류(현지조사 후 재심의)
- 전문가 현지조사(2018. 6. 1. / ○○○, ○○○, ○○○, ○○○)
 - 유적 내 확인된 도로유구를 재현할 수 있도록 사비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 공원용지 등 유적 전시공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요 유구의 상부에 조성할 수 있도록 반영 필요

마. 참고사항

(1) 조사개요

- 조사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4번지 일원
- 조사면적 : 26,127m²
- 조사기간 : 2017. 2. 22.~2018. 5. 11.(실조사일수 155일)
- 조사비용 : 1,105,200천원
- 조사기관 : (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 조사결과
 - 총 4개의 문화층에서 백제시대 사비기에 해당하는 유구가 확인됨
 - 백제시대 주거지 43기, 도로유구 3기, 우물 6기, 화장실 4기 등 총 199기의 유구가 확인됨

(2) 지자체 의견(2018. 9. 7. /부여군)

- 해당 사업부지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도로유구 재현 및 전시공간 조성)을 통해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이주대책)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특별보존지구 내 주민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사비한옥마을 조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5.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8.8.27.) 및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중요 유구의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북개발공사
- (2) 신청내용 :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
 - 보존대상 및 범위 : II-4지점 내 도로유구(1,030m²)
 - 보존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산 3-11번지 일원
 - 보존방안 : 일부 현지보존
 - 도로유구의 동쪽 일부(약 50m) 복토보존 후 잔디를 식재하여 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유적 안내판(3D 조감도 및 사진 포함), 데크 등) 설치
 - 사업부지 내 도로유구 확인된 위치에 화강석 표지판 설치(남동부, 중간부, 북서부)

라. 처리경과

- 전문가 검토회의(2018. 8. 27. / ○○○, ○○○, ○○○)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 : 평점 88.04점
 - 유적 내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는 능선 정상부의 남쪽 사면을 굴광 또는 성토하여 조성하였으며 유래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로유구의 잔존상태는 능선 사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조성 시기 및 성격으로 볼 때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조사개요

- 조사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산50-5번지 일원
- 조사면적 : 138,867㎡(시굴) 및 25,650㎡(발굴)
- 조사기간 : 2017. 7. 31.~2018. 8. 27.(실조사일수 227일)
- 조사비용 : 1,488,704,000원
- 조사기관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조사결과
 - 신석기~조선시대 생활 및 분묘, 건축유적 등 215기의 유구가 확인됨.
 - 이 중 II-4지점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는 해발 150~160m의 능선 정상 남쪽 사면과 일부 능선을 따라 남동~북서 방향으로 완만한 'S'자 형태로 길이 약 322m, 너비 약 520~560cm 정도로 확인됨
 - 도로유구는 굴토 및 성토공법으로 조성하였고 노면에서 수레바퀴흔적이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기와편, 토기편, 철촉편 등이 출토됨.

(2) 지자체 의견(2018. 9. 10. / 옥천군)

- 옥천군은 전체면적 대비 83.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이용규제로 인한 인구감소 및 경제활동 제약 등 지역민의 피해가 막대함.
- 따라서 옥천군은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음.
- 도로유구는 산업단지 중간부의 가장 높은 산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사의 상당량을 여기에서 확보해야 하므로 도로유구의 전체 현장보존 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불가능한 실정임.
- 유적 중 대부분 지역이 부분완료 조치 이후 이미 토목공사가 50% 이상 시행되었으며, 도로유구가 확인된 II-4지점만 남아있어, 그 주변 북동쪽과 남서쪽 사면은 상당부분 절토된 상태임.
- 따라서 사업부지 내 공원부지(배수지)에 도로유구를 부분적으로 보존하고, 표지판 및 3D영상을 제작하여 활용(옥천향토자료 전시관 전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지며, 옥천군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겠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6명, 보류 1명 / 출석 7명

16. 세종 송곡리(산26-1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가. 제안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송곡리(산26-1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부지 내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8. 5. 18.) 및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중요 유구의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 동 건물은 본 위원회 제8차 회의(2018. 8. 16.) 시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신청내용 :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
 - 보존대상 및 범위 : 통일신라시대 토성(827m²)
 - 보존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곡리 산26-1번지 일원
 - 보존방안 : 현지보존
 - 토성 기저부에서 15m 이격하여 단독주택 건축
 - 진입도로는 별도의 토성 기저부에서 이격 없이 조성 후 웬스를 설치하여 토성 보호 조치

라. 처리경과

- 전문가 검토회의(2018. 5. 18. / ○○○, ○○○, ○○○)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 : 평점 87.38점
 - 토성의 축성기법 및 출토유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판축토성으로 판단되며, '치'가 시설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현지보존하여 보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 현지조사(2018. 8. 29. / ○○○, ○○○, ○○○)
 - 해당 사업부지 내 대지 조성 및 도로 개설은 토성 기저부에서 10m 이상 이격하고, 건축선은 토성 기저부에서 15m 이상 이격이 필요함.

마. 참고사항

(1) 조사개요

- 조사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곡리 산26-1번지 일원
- 조사면적 : 3,115m²
- 조사기간 : 2018. 4. 20.~2018. 5. 26.(실조사일수 5일)
- 조사비용 : 16,850,000원
- 조사기관 : (재)고운문화재연구원
- 조사결과
 - 시굴조사 결과 토성 및 수혈유구 12기, 기단석렬 3기, 구상유구 1기, 회곽묘 3기 등의 유구가 확인됨
 - 토성은 사질 및 점질토를 이용하여 정연하게 토축한 흔적이 확인됨
 - 성벽토 내에서 경질토기편이 출토되고 있어 나말여초 무렵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현지조사 결과대로 보존방안 수립
- 부결 6명 / 출석 6명

17. 서울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암사동 소재 '서울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부지 내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8.6.25.) 및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중요 유구의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 (2) 신청내용 :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
 - 보존대상 및 범위 : 가마 1기(37m²)
 - 이전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10번지
 - 보존방안 : 이전보존
 - 암사역사공원 내 가마를 이전보존
 - 기와가마 유구전시관 및 유적 안내판 설치

라. 처리경과

- 전문가 검토회의(2018. 6. 25. / ○○○, ○○○, ○○○)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 : 평점 87.38점
 - 해당 가마는 배연부가 삭토되었으나 그 외 가마잔존부의 상태가 양호하며, 서울에서는 이러한 역사유구가 보존된 사례가 많지 않은 자료임
 - 기와가마는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주변 유적공원으로 이전복원하여 학술·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사항

(1) 조사개요

- 조사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10번지 일원
- 조사면적 : 700m²
- 조사기간 : 2018. 4. 24.~2018. 6. 25.(실조사일수 23일)
- 조사비용 : 133,800,000원
- 조사기관 : (재)한백문화재연구원
- 조사결과
 - 조선시대 주거지, 분묘, 가마 등 총 18기의 유구가 확인됨
 - 기와 가마는 평면 일자형, 단면 계단식의 소성실을 갖춘 구조로 조선 전기 기와 가마의 발달구조를 잘 보여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18. 강화 신정리(233-1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신정리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6.10.18.) 및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중요 유구의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 동 건물은 본 위원회 제8차 회의(2017. 7. 18.) 시 '전문가 검토회의 및 현지조사 결과대로 조치(강화중성 외피선으로부터 15m 이격하여 완충지대를 설치)'토록 부결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신청내용 :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
 - 보존대상 및 범위 : 강화중성 외피토루 등(232m²)
 - 보존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233-11번지
 - 보존방안 : 현지보존
 - 강화중성 외피토루 경계선에서 15m 이내는 현지보존하고, 단독주택(1층, H=4.4m)을 신축하고자 함

라. 처리경과

- 전문가 검토회의(2016. 10. 18. / ○○○, ○○○, ○○○)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 : 평점 90.4점
 - 강화중성은 고려시대 도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보존조치 필요
 - 부지 경계는 성벽 외피토루 경계선에서 15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함

- 본 위원회 회의 현황
 - 제13차 회의(2016. 11. 18.) :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을 반영한 건물배치 계획 등을 제출 받아 재검토’/보류(3~4m 이격 현지보존 방안 제출)
 - 제6차 회의(2017. 6. 21.) : ‘현지조사 후 재검토’/보류(10m 이격 현지보존 방안 제출)
 - 현지조사 실시(2017. 7. 6. / ○○○, ○○○, ○○○)
 - 본 유적은 문헌기록과 발굴 결과가 일치하는 매우 가치가 높은 유적임
 - 따라서, 기존 전문가검토회의(2016. 10. 18.)에서 자문한 바와 같이 토성 외피에서 최소 15m 이내 구간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8차 회의(2017. 7. 19.) : ‘전문가 검토회의 및 현지조사 결과대로 조치’/부결(10m 이격 현지보존 방안 제출)

마. 참고사항

(1) 조사개요

- 조사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233-11번지
- 조사면적 : 546㎡
- 조사기간 : 2016. 9. 30.~2016. 10. 7.(실조사일수 8일)
- 조사기관 : 한국문화재재단
- 조사결과
 - 고려시대 고종37년(1250)에 축조된 판축토성인 강화중성 실체 확인

(2) 지자체 의견(2018. 9. 4. / 인천광역시 문화재사업소)

- 보존유적 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요청함
- 매장문화재 보존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19. (재)진흥문화재연구원 조사요원의 허위등록 및 발굴조사의 부적정 등 행정처분 심의

가. 제안사항

경주 소재 (재)진흥문화재연구원이 보존과학연구원을 허위로 채용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하고, 발굴현장의 조사원 참여 일수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법령위반 행위가 있어 해당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단법인 진흥문화재연구원이 보존처리연구원을 허위로 채용하여 조사요원으로 등록하고, 조사원의 발굴조사 현장 투입 일수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4>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기관개요

- 조사기관명 : (재)진흥문화재연구원(경북 경주시 백률로 57번길 10)
- 조사기관 등록일 : 2014. 2.19.
- 원 장 : ○○○

(2) 법령위반 행위

가)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 ① 육상발굴조사기관 인력 기준 미달(보존과학연구원)인 상태로 발굴허가의 신청 및 발굴조사의 실시

【관련 법령】

- 매장문화재법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항에 따르면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 매장문화재법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제3항 <별표 4>에 따르면 **육상발굴조사기관은 보존과학연구원 1명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제1항 제6호에는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기관 인력의 업무범위를 ‘**보존과학연구원은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반 내용 】

- 진흥문화재연구원은 '17. 1월 발생한 보존과학연구원 결원 충원을 위하여 '17.2.1. ○○○를 허위로 채용하여 문화재청에 조사요원으로 등록하였음. ○○○의 진술에 따르면 ○○○는 동 기간 중에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보존처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
 - 즉, 진흥문화재연구원은 '17.2.1.부터 '18.8.29.까지 약 1년 7개월간 사실상 육상발굴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18건의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음.
- ② 당초 발굴 허가받은 발굴조사 계획서 상 인력 변동 사항이 발생했으나, 대체 조사원 없이 발굴조사 실시

【 관련 법령 】

- 매장문화재법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제1호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인 발굴조사 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발굴조사 계획서에는 ‘비용산출 상세 명세서’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발굴조사 계획 변경 승인) 제1항에 따르면 **발굴허가서 발급 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계획서에 명기된 조사인력의 투입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유와 내역을 적시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반 내용 】

- 진흥문화재연구원이 '17.12.27. 문화재청에 제출한 경주 성동동 도시계획대로 유적(허가번호 2017-1549호)의 발굴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 13일간의 현장조사에 단장(3일), 책임조사원(9일), 조사원(○○○ 13일), 준조사원(12일), 보조원(9일)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18.1.8.부터 3.23.까지 현장조사를 13일간(2.26~2.28,3.2,3.5, 3.14~3.23.) 실시, 현장조사에 단장(3일), 책임조사원(9일), 조사원(○○○ 13일), 준조사원(12일), 보조원(9일)이 참여한 것으로 문화재청에 발굴 완료 보고하였음.
- 그러나, 진흥문화재연구원의 '2018년 개인별 연차(휴가) 신청서'에 따르면 조사원 ○○○은 3.5., 3.14., 3.21. 3일 동안 '개인 사유'로 연구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은 연차 기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13일 동안 현장조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
- 또한, 진흥문화재연구원은 경주 동국대학교 선센터 건립부지 내 유적(허가번호 2018-0140호)의 발굴조사 완료 보고에서 ○○○이 조사원으로 6일(3.6.~9., 3.12.~13.) 동안 현장조사에 참여했다고 문화재청에 보고하였으나, ○○○은 3.6~7. 기간 중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진흥문화재연구원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조사인력의 투입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문화재청에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원의 대체 투입 없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의 완료를 허위로 보고하였음.

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 관련 법령 】

- 매장문화재법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제3항 <별표 4>에 따르면 육상발굴조사기관은 보존과학연구원 1명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반 내용 】

- 진흥문화재연구원은 '17.2.1.부터 '18.8.29.까지 약 1년 7개월간 사실상 보존과학연구원 없이 육상발굴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조사기관을 운영하였음.

라. 발굴조사 기관 의견('18.9.17. 진흥문화재연구원)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설립 요건 유지를 위하여 '17.2.1. ○○○를 허위로 채용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것은 인정함.
- 다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처리는 (재)중앙문화재연구원에 위탁 처리를 하였으며, 경주 소재 신라보존과학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음.
- 발굴 허가 후 조사 인력의 투입 내역에 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함.
- 다만, 경주 성동동 도시계획대로 유적(허가번호 2017-1549호)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대체 조사원의 투입 없이 단장이 수시로 투입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주 동국대학교 선센터 건립부지 유적(허가번호 2018-0140호)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단장과 다른 발굴조사에 투입되지 않은 ○○○이 함께 투입되어 조사를 마무리 하였음.

마. 문화재청 검토의견

(1)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

- 진흥문화재연구원은 '17.2.1.부터 '18.8.29.까지 약 1년 7개월간 사실상 육상 발굴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18건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경주 성동동 도시계획대로 유적(허가번호 2017-1549호), 경주 동국대학교 선센터 건립부지 유적(허가번호 2018-0140호)의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굴 허가 신청 시 제출한 발굴조사 계획서에 명시된 조사 인력의 투입 내역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대체 조사인력의 충원 없이 발굴조사 현장을 운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 완료(약 보고서 등)를 허위로 보고하였음.
- 위 사항은 진흥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별표 4 II.개별기준 1.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하고자 함

(2)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에 미달

- 진흥문화재연구원은 보존과학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1년 7개월간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별표 4 II.개별기준 5의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고자 함

(3) 최종 검토의견

- 가), 나)와 같이 진흥문화재연구원은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별표 4 II.개별 기준 1과 5의 위반행위를 저질렀으므로, I.일반기준 1. 에 따라 ‘영업정지 1년’에 ‘영업정지 3개월’의 2분의 1을 더하여 1년 1월 15일의 발굴조사 업무 정지 처분 조치하고자 함

바. 관련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단
-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II.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II.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3개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에 관한 계획서. 이 경우 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 계획을 포함한다)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
2.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제토(除土: 흙 고르기),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구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육상발굴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2명 ○ 준조사원 2명 ○ 보조원 2명 ○ 보존과학연구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온·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하략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발굴조사 계획 변경승인) ① 발굴허가서 발급 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계획서에 명기된 조사인력의 투입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유와 내역을 적시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7명, 보류 1명 / 출석 8명

보고 사항

1.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보호법」의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발굴조사허가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특별보존지구 내에서의 10일 이내의 발굴조사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신청에 대하여 발굴허가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 허가목록

문화재명 (유적명)	지정현황	신청사유	조사기관	면적 (㎡)	조사 유형	조사 기간	허가 일
포항 남옥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경계부 구조 물설치부지 내 유적	남미질부성 (기념물제96호)	경계부 옹벽설치	세종문화재 연구원	496	시굴	3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남성리 346번지 일원 ○ 경 과 :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2018.8.8.)를 득하여 시굴 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임 						
경주 배반동(75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경주 남산 일원(사적 311호)	단독주택 신축	한국문화재단	790	시굴	4	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758번지 ○ 경 과 : 국가지정문화재(경주 남산 일원 / 사적 제311호) 현상변경 허가 (2018.5.11.)를 득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임 						
경주 남산가는길 주변 조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사적 457호)	조경정비	화랑문화재 연구원	19,822	시굴	9	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404번지 ○ 경 과 : 국가지정문화재(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 사적 제457호) 현상 변경 조건부허가(2018.5.9.)를 득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임 						
경주 황남동(463-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한국문화재단	790	시굴	4	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463-2번지 ○ 경 과 : 경주시 협의(2017.12.27.)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행위허가(2018.6.18.)를 득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임 						

문화재명 (유적명)	지정현황	신청사유	조사기관	면적 (㎡)	조사 유형	조사 기간	허가 일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사적 제345호)	복원정비	대한문화재 연구원	198	발굴	3	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1번지 일원 ○ 조사계획 : 2·3호 가마 및 도기가마 확인을 위한 추가 정밀발굴조사 						
아산 영인석불 보수정비 사업부지 내 유적	영인석불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40호)	보수정비	충남역사문화 연구원	50	발굴	5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615번지 일원 ○ 조사계획 : 영인석불 보수정비사업부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부여 쌍북리(568-16일원) 건물 증축부지 내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근린생활시설 증축	한라문화재 연구원	258	시굴	2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68-16번지 일원 ○ 조사계획 : 부지 내 시굴조사 						
부여 구아리(66-3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조성 부지 내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미래문화재 연구원	440	시굴	2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66-3번지 ○ 조사계획 : 부지 내 시굴조사 						
부여 쌍북리(384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단독주택 신축	한국문화재단	610	시굴	3	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84번지 일원 ○ 조사계획 : 부지 내 시굴조사 						
원주 거둔사지 당간지주	사적 제168호	정비복원	강원문화재 연구소	4,853	시굴	7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248번지 일원 ○ 경 과 : 원주 거둔사지(사적 제168호)에 대한 2018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임 						
강릉고등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부지 내 유적	사적 제490호	학교시설 정비	강원고고문화 연구원	364	발굴	9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7-2번지 일원 ○ 경 과 : 강릉 초당동유적(사적 제490호) 현상변경 조건부허가(2018.5.15.)를 득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임 						
서울 수방사 1방공여단 시설부지 내 유적	서울 백안산 일원 (명승 제67호)	군시설 신축	(재)한울문화재 연구원	266	시굴	3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 2-1번지 ○ 조사계획 : 서울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따른 시굴조사 						

문화재명 (유적명)	지정현황	신청사유	조사기관	면적 (㎡)	조사 유형	조사 기간	허가 일
수원화성(남수동 구간 성벽 내측부)	수원화성 (사적 제3호)	복원정비	(재)한울문화재 연구원	13,303	시굴	9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57번지 ○ 조사계획 : 남수동 문화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시굴조사 						
인천 강화 공공하수도 확충사업부지 내 유적	서울 삼랑성 (사적 제130호)	공공하수도 확충	(재)혜안문화재 연구원	57	발굴	3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 조사계획 : 삼랑성 보호구역 내 공공하수도 확충사업부지 내 정밀발굴조사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원안접수 6명 / 출석 6명

2. 2018년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소위원회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2018년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소위원회(2018.9.5.)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다. 주요내용

- (1) 안 건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 9건
- (2) 참석위원 : 이청규, 한창균, 박광춘, 김건수
- (3) 회의결과
 - 심의사항(8) : 원안가결 3건, 조건부가결 3건, 보류 2건
 - 검토사항(1) : 부결 1건

라. 심의결과

<심의사항 8건>

건 명	주 요 내 용	의결사항
1. 「고흥발포만호성」 청림공원 조성 부지 내 발굴	(1) 신 청 인 : 고흥군수 (2) 문화재명 : 고흥 발포 만호성(전라남도 기념물 제27호) ○ 소 재 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624번지 일원 ○ 지 정 일 : 1977. 10. 20. (3) 신청내용 : 발굴(정밀)조사 허가 ○ 조사지역 :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내발리 968번지 ○ 조사면적 : 1,876㎡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175,809,393원 ○ 조사기관 : (재)나라문화연구원	○ 조건부가결 - 조사지역 내 서북쪽 구역 추가 시굴조사 실시

건 명	주 요 내 용	의결사항
2. 「산청 특리 지석묘군」 주변 하천 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발굴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문화재명 : 산청 특리 지석묘군(경상남도 기념물 제63호) ○ 소 재 지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291번지 일원 ○ 지 정 일 : 1997. 1. 30. (3) 신청내용 : 발굴(시굴)조사 허가 ○ 조사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515번지 일원 ○ 조사면적 : 60,000m ²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90,352,000원 ○ 조사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 보류 -현지조사 후 재심의
3.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정비사업 부지 발굴	(1) 신 청 인 : 산청군수 (2) 문화재명 :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보물 제72호) ○ 소 재 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속면 운리 302번지 ○ 지 정 일 : 1963.1.21 (3) 신청내용 : 발굴(정밀)조사 허가 ○ 조사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단속면 운리 302번지 일원 ○ 조사면적 : 2,345m ²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210,380,000원 ○ 조사기관 : (재)경상문화재연구원 (4) 보완내용 : 전체 사역에 대한 기준점 및 그리드 설정	○ 원안가결
4. 「김해 원지리 고분」 정비사업부지 발굴	(1) 신 청 인 : 김해시장 (2) 문화재명 : 김해 원지리 고분(경상남도 기념물 제290호) ○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 2-2번지 ○ 지 정 일 : 2018. 5. 3 (3) 신청내용 : 발굴(정밀)조사 허가 ○ 조사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 2-2번지 일원 ○ 조사면적 : 800m ²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185,935,770원 ○ 조사기관 : (재)가야문화연구원 (4) 보완내용 : 고분 봉토의 그리드 재설정	○ 원안가결

건 명	주 요 내 용	의결사항																			
<p>5. 구미 원리(산1번지 일원) 관광농원체험장 조성부지 발굴</p>	<p>(1) 신청인 : 농업회사법인 이레 주식회사</p> <p>(2) 신청내용 : 발굴(정밀)조사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산1번지 일원 ○ 조사면적 : 7,200㎡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299,880,000원 ○ 조사기관 : (재)가온문화재연구원 <p>(3) 보완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464 853 1171 1070"> <thead> <tr> <th colspan="2">내용</th> <th>당초</th> <th>변경</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조사비용</td> <td>150백만원</td> <td>300백만원</td> <td>증 150백만원</td> </tr> <tr> <td rowspan="2">조사 일수</td> <td>현장조사</td> <td>40일</td> <td>50일</td> <td>증 10일</td> </tr> <tr> <td>보 고 서</td> <td>20일</td> <td>50일</td> <td>증 30일</td> </tr> </tbody> </table>	내용		당초	변경	비고	조사비용		150백만원	300백만원	증 150백만원	조사 일수	현장조사	40일	50일	증 10일	보 고 서	20일	50일	증 30일	<p>○ 원안가결</p>
내용		당초	변경	비고																	
조사비용		150백만원	300백만원	증 150백만원																	
조사 일수	현장조사	40일	50일	증 10일																	
	보 고 서	20일	50일	증 30일																	
<p>6. 「예산산성」 정비사업부지 발굴변경</p>	<p>(1) 신청인 : 예산군수</p> <p>(2) 문화재명 : 예산산성(충청남도 기념물 제30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25-8번지 일원 ○ 지정일 : 1982. 08. 03. <p>(3) 신청내용 : 발굴(시굴·정밀)조사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25-52번지 일원 ○ 조사면적 : 2,536㎡(시굴 2,5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발굴조사의 경우 <u>면적변경 없이</u> 기허가 범위(1,855㎡) 내 조사기간 연장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4일 (정밀 38일, 시굴 6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193,305,870원 ○ 조사기관 : (재)가경고고학연구소 	<p>○ 조건부가결 -발굴조사 착수전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p>																			

건 명	주 요 내 용	의결사항				
7. 「천안 성거산 위례성」 정비 사업부지 발굴	<p>(1) 신 청 인 : 천안시장</p> <p>(2) 문화재명 : 천안 성거산 위례성(충청남도 기념물 제4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 산45번지 일원 ○ 지 정 일 : 1998. 07. 28. <p>(3) 신청내용 : 발굴(정밀)조사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 산45번지 ○ 조사면적 : 200㎡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7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146,884,300원 ○ 조사기관 : (재)고운문화재연구원 <p>(4) 보완내용 : 조사방법 및 유적 보존 방안 보완</p> <table border="1" data-bbox="424 1025 1171 1328"> <thead> <tr> <th data-bbox="424 1025 794 1070">당 초</th> <th data-bbox="794 1025 1171 1070">보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24 1070 794 1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벽 체성부 시굴 및 동쪽 사면부 석축유구 발굴조사 - 목곽고 및 유적 관련 보존 방안 없음 </td> <td data-bbox="794 1070 1171 1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 그리드 설정 후 서벽 체성부 발굴(성벽노출) 및 동쪽 사면부 석축유구 발굴조사 - 현재 목곽고 보호조치 현황 및 유적 조사 완료 후 보호조치 방안 제시 </td> </tr> </tbody> </table>	당 초	보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벽 체성부 시굴 및 동쪽 사면부 석축유구 발굴조사 - 목곽고 및 유적 관련 보존 방안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 그리드 설정 후 서벽 체성부 발굴(성벽노출) 및 동쪽 사면부 석축유구 발굴조사 - 현재 목곽고 보호조치 현황 및 유적 조사 완료 후 보호조치 방안 제시 	<p>○보류</p> <p>-조사계획 보완 후 재심의</p>
당 초	보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벽 체성부 시굴 및 동쪽 사면부 석축유구 발굴조사 - 목곽고 및 유적 관련 보존 방안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 그리드 설정 후 서벽 체성부 발굴(성벽노출) 및 동쪽 사면부 석축유구 발굴조사 - 현재 목곽고 보호조치 현황 및 유적 조사 완료 후 보호조치 방안 제시 					
8. 「춘천 신매리 유적」 정비사업부지 발굴	<p>(1) 신 청 인 : 춘천시장</p> <p>(2) 문화재명 : 춘천 신매리유적(사적 제489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2번지 일원 ○ 지 정 일 : 2007.11.14. <p>(3) 신청내용 : 발굴(정밀)조사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역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736번지 일원 ○ 조사면적 : 10,349㎡ ○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실조사일수) ○ 조사비용 : 528,000,000원 ○ 조사기관 : (재)예맥문화재연구원 	<p>○조건부가결</p> <p>-기준독을 남기고 유구 노출상태에서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p>				

<검토사항 1건>

건 명	주 요 내 용	의결사항
<p>1. 「창원 다호리 고분군」 정비사업 부지 내 표본조사</p>	<p>(1) 신 청 인 : 창원시장 (2) 문화재명 : 창원 다호리 고분군(사적 제327호) ○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37-3번지 ○ 지 정 일 : 1988. 9. 3. (3) 신청내용 ○ 조사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172-1번지 일원 ○ 조사면적 : 33,787㎡ ○ 조사방법 : 표본조사 (4) 검토내용 : 표본조사 시 굴삭기 사용 가능 검토 ○ 당초 인력조사에서 미니 굴삭기 제한적 사용으로 변경 -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시 조사 대상 지역의 일부 구역은 개흙과 밀도가 높은 점토층으로 되어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미니 굴삭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이 경우 현지조사단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 의견 제시</p>	<p>○부결 -당초 인력발굴로 실시하고, 조사 계획 수립시 기준점 및 그리드 발굴 실시 반영</p>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원안접수 6명 / 출석 6명